

■ 「현금IC카드 이용약관」 개정대비표

1. 개정내용

현 행	개정안	비 고
<p>제1조(적용범위)</p> <p>① 「하나 현금IC카드」(이하 "현금IC카드"라 함)란 IC칩이 내장된 플라스틱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 입출금기, 무인공과금 수납기(이하 "자동화기기"라 함)를 이용하여 예금거래를 하거나 현금카드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합니다)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대금을 결제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함)이 제공하는 카드를 말하며, 현금IC카드를 이용한 서비스는 본 약관을 우선 적용합니다.</p> <p>②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예금거래 기본약관, 전자통장 특약,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및 금융결제원의 CD공동이용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p> <p>제1조(목적) (신설)</p> <p>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u>다음 각 호와</u> 같습니다. 1. IC칩: 카드에 장착될 수 있는 집적회로(IC)를 말합니다.</p>	<p>제1조(적용범위) (삭제)</p> <p>제1조(목적) <u>이 약관은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현금IC카드(이하 "카드"라 합니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이용자"라 합니다)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u></p> <p>제2조(용어의 정의) <u>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u></p> <p>1. '카드'라함은 <u>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 입출금기, 무인공과금수납기(이하 "자동화기기"라 합니다) 또는 제휴처 결제단말기를 이용하여 예금거래를 하거나 현금카드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합니다)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 대금을 결제할 목적으로 이용자가 은행 예금계좌와 연결하여 비밀번호를 신고하고 교부받은 IC(집적회로)칩이 내장된 카드를 말합니다</u></p>	<p>제1조 전체 삭제 후 신설</p> <p>-1 항: "카드"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제휴처 결제 단말기 이용예금 거래를 추가함</p>

현행	개정안	비고
<p>2. <u>카드출금 비밀번호: 현금IC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 등 자동화기기에서 인출 등의 거래시 이용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직접 지정하는 4자리의 숫자로 구성된 비밀번호를 말합니다</u></p> <p>3. <u>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현금IC카드 발급시 이용자가 직접 지정하는 6자리의 구성된 비밀번호를 말합니다.</u></p>	<p>2. <u>'카드 출금비밀번호'라 함은 카드 발급시 이용자가 신청하는 4자리 숫자로 구성된 비밀번호를 말하며 계좌별로 등록하여야 합니다.</u></p> <p>3. <u>'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이라 함은 카드 발급시 이용자가 신청하는 6자리의 숫자로 구성된 비밀번호를 말하며 카드별로 하나의 PIN을 등록하여야 합니다.</u></p>	<p>-2 항: "카드"를 기준으로 개정</p> <p>-3 항: "카드"를 기준으로 개정</p>
<p>4 ~ 8 (신설)</p>	<p>4. <u>'카드 결제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가맹점에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카드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u></p> <p>5. <u>'가맹점'이라 함은 금융기관과 카드 결제서비스 업무를 취급하기로 약정한 업소 또는 시설을 말합니다.</u></p> <p>6. <u>'카드 결제인출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제휴처에 물품(또는 서비스)구매와 함께 현금 지급을 요청하면, 이용자는 카드와 연결된 예금계좌에서 물품(또는 서비스) 구매대금을 제휴처에 지급하고, 제휴처는 이용자에게 현금지급 요청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u></p> <p>7. <u>'제휴처'라 함은 참가은행 등이 카드 결제인출서비스를 위탁한 가맹점을 말합니다.</u></p> <p>8. <u>'가맹점 잔돈적립서비스'라 함은 잔돈적립 가맹점에서 이용자가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물품 구매대금 결제 후 발생한 잔돈을 현금카드에 연계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u></p>	<p>-4 항~8 항 신설</p>
<p>제3조(이용계약의 성립)</p> <p><u>이용자가 은행이 정한 "현금IC카드발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은행이 이를 접수·승인함과 동시에 이용자에게 현금IC카드를 교부함으로써 성립합니다.</u></p>	<p>제3조(카드의 발급)</p> <p>① <u>카드발급(재발급 포함) 신청시에는 은행이 정한 "은행거래신청서", "현금IC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은행은 본인확인 등 제반사항을 확인한 후 카드를 발급하며 이용자에게 카드를 교부함으로써 계약은 성립합니다.</u></p>	<p>3 조와 4 조를 통합하여 3 조로 변경함.</p> <p>기존 3조는 "카드"를 기준으로 개정하여 3조1항으로</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4조(현금IC카드의 계좌 등록)</p> <p>① 현금IC카드에는 2계좌 이상 등록이 가능하며, 카드 1매당 최대 10계좌까지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p> <p>② 이용자가 계좌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p> <p>제5조(카드출금 비밀번호 및 PIN의 신고)</p> <p>현금IC카드의 카드출금시 이용할, 카드출금 비밀번호와 PIN은 은행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p> <p>제6조(현금IC카드에 의한 거래)</p> <p>① 현금IC카드는 통장이나 청구서 또는 수표의 제출 없이 현금자동지급기 등 자동화기기에 의하여 현금인출(자금이체포함) 및 조회 등의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p> <p>② (신설)</p> <p>③ 서비스 이용시 은행은 PIN번호, 계좌번호, 카드출금 비밀번호가 사전에 은행에 신고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 서비스 이용자를 신청인 본인으로 인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현</p>	<p>② <u>카드 1매당 최대 10 계좌까지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예금계좌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은행에 신청하여야 합니다.</u></p> <p>제4조(현금IC카드의 계좌 등록)(삭제)</p> <p>제4조(비밀번호) (삭제)카드출금시 이용할, 카드 출금비밀번호와 PIN은 은행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p> <p>제5조(카드의 이용)</p> <p>① <u>이용자는 카드로 은행 본지점, CD공동망 참가은행(이하"참가은행"이라 합니다) 및 은행과 제휴한 기관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통장이나 청구서 또는 수표 등의 제출없이 입금, 출금, 잔액조회, 계좌이체 등 기타 은행이 정하는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u></p> <p>② <u>이용자는 카드로 제휴처의 결제단말기를 이용하여 카드와 연결된 예금계좌에서 인출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잔돈적립가맹점의 결제단말기를 이용하여 카드와 연결된 예금계좌로 잔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u></p> <p>③ <u>은행은 카드 거래시 계좌번호, 비밀번호(PIN 포함) 등이 사전에 은행에 신고된 내용과 일치할 경우 카드와 연결된 예금계좌의 예금주 본인으로 인정하고 거래에 응합니다. 다만, 카드</u></p>	<p>하고, 기존 4조는 3조 2항으로 함</p> <p>3 조와 4 조를 통합하여 삭제하고 4 조에서 6 조까지 한 조씩 올림</p> <p>조 제목 변경 "현금카드" 삭제</p> <p>조 제목 변경</p> <p>제휴처의 결제단말기 거래 신설</p> <p>②항을 ③항으로 한항 내리고, 개정 서술함</p>

현행	개정안	비고
<p><u>금IC카드에 계좌가 1개만 등록된 경우에는 PIN번호 확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은행과 소액거래(5만원 이하 거래)에 대하여 본인확인 생략 특약을 체결한 가맹점에서는 카드출금비밀번호 입력 생략이 가능합니다.</u></p> <p>③ <u>자동화기기의 장애로 인하여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기타 혼잡 등 창구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점 창구에 카드를 제시하여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u></p> <p>④ <u>예금주가</u>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국내 가맹점에서 일시불에 한하여 <u>예금잔액 범위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u></p> <p>⑤ 가맹점에서 카드이용 후 이용대금이 <u>예금주의 결제계좌에서</u> 자동 출금되어 거래가 종료된 이후에 <u>예금주가</u> 반품, 취소 등의 이유로 가맹점과 합의하여 해당거래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맹점의 <u>카드단말기</u>를 통해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은 <u>예금주의 결제계좌로부터</u> 출금하였던 금액을 같은 <u>결제계좌로</u> 입금합니다.</p> <p>⑥ <생략></p>	<p><u>에 계좌가 1개만 등록된 경우에는 PIN 확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소액거래(5만원 이하 거래)에 대하여 본인 확인 생략 특약을 체결한 가맹점에서는 카드의 출금비밀번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u></p> <p>④ <u>이용자가</u>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국내 가맹점에서 일시불에 한하여 <u>카드와 연결된 예금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u></p> <p>⑤ 가맹점에서 카드이용 후 이용대금이 <u>이용자의 카드와 연결된 예금계좌에서</u> 자동 출금되어 거래가 종료된 이후에 <u>이용자가</u> 반품, 취소 등의 이유로 가맹점과 합의하여 해당 거래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맹점의 <u>결제단말기</u>를 통해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은 <u>이용자의 예금계좌로부터</u> 출금하였던 금액을 같은 <u>예금계좌로</u> 입금합니다.</p> <p>⑥ <좌동></p> <p>⑦ <u>자동화기기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기타 혼잡 등 창구운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은행 본지점 창구에 카드를 제시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u></p>	<p>③항을 ⑦항으로 이동</p> <p>예금주를 이용자로 용어수정</p> <p>예금주를 이용자로 용어수정</p> <p>③항을 ⑦항으로 이동</p>
<p>제7조(현금자동지급기 거래명세 확인)</p> <p>① <u>현금IC카드의 이용시 현금자동지급기 등 자동화기기에서 제공되는 거래 명세에 의하여 이용 금액 등 거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u></p>	<p>제6조(거래명세)</p> <p>① <u>은행 및 참가은행은 카드를 이용한 자동화기기 거래 시마다 거래명세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거래금액과 잔액 등을 기재하여 이용자에게 교부하며 이용자는 제공되는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이용금액 등 거래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u></p>	<p>조 제목 변경</p> <p>"카드"를 기준으로 개정 서술함</p> <p>'교부생략' 언급</p>

현 행	개정안	비 고
<p>② <u>예금주가</u> 가맹점에서 <u>결제거래시</u> 은행은 이용명세를 <u>예금주의 통장(결제계좌)에</u> 기장해 줌으로서 이용명세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p>	<p><u>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u></p> <p>② <u>이용자가</u> 가맹점에서 <u>결제, 인출 또는 잔돈적립 거래시</u> 은행은 이용명세를 <u>이용자의 예금계좌 통장에</u> 기장해 줌으로서 이용명세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p>	<p>예금주를 이용자 로 용어수정</p>
<p><u>제7조(이용한도 및 이용시간)(신설)</u></p>	<p><u>제7조(이용한도 및 이용시간)</u></p> <p>① <u>카드의 1회 및 1일 이용금액의 한도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용한도는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 자동화기기에 게시합니다.</u></p> <p>② <u>카드를 이용한 자동화기기 및 가맹점 이용시간은 은행 및 참가은행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용시간은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 자동화기기에 게시합니다.</u></p> <p>③ <u>제휴처 결제단말기를 이용한 인출 또는 잔돈적립 가맹점에서 잔돈적립 거래에 대한 이용한도와 이용시간은 이용자가 인식하기 용이한 별도 장소에 게시합니다.</u></p> <p>④ <u>제 1항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간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이체실적이 없는 고객은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1일 및 1회 이체한도를 70만원으로 하향조정합니다.</u></p> <p>⑤ <u>제 1항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간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은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1일 및 1회 인출한도를 70만원으로 하향조정합니다.</u></p> <p>⑥ <u>제 4,5항에 의해 이체·인출한도가 하향 조정된 이용자 본인이 별도 요청시까지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1일 및 1회 이체·인출한도가 70만원으로 유지됩니다.</u></p> <p>⑦ <u>1회 1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송금·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 내에서 30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이체·인출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점권으로 입금된 경우와 제휴처 결제단말기를 통해 인출하는 경</u></p>	<p>제휴처 결제단말기를 통한 거래 신설</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8조(변경, 사고 등의 신고)</p> <p>① <u>이용자는 현금IC카드에 계좌를 추가, 삭제,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 영업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u></p> <p>② <u>현금IC카드의 분실, 훼손, 도난, PIN번호 누설 등 사고발생시에는 은행 영업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u></p> <p>제9조(현금IC카드의 재발급)</p> <p><u>은행은 이용자로부터 현금IC카드의 분실, 도난, 멸실, 훼손에 따른 재발급 요청을 접수한 경우 신고한 비밀번호를 대조하고,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깊게 본인을 확인한 후 재발급 합니다.</u></p> <p>제10조(현금IC카드 출금비밀번호 오류 및 사용중지)</p> <p>① <u>이용자가 일자에 관계없이 현금 IC 카드 출금비밀번호를 누적하여 3 회 오류 입력시 또는 PIN 을 누적하여 5 회이상 오류 입력시에 은행은 현금 IC 카드를 이용한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u></p> <p>② ~④ (생략)</p> <p>⑤ (신설)</p> <p>⑥ (신설)</p>	<p><u>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u></p> <p>제8조(분실,도난 등의 신고)</p> <p>① <u>이용자는 카드의 분실, 도난, 멸실, 훼손, 비밀번호(PIN 포함) 누설 등의 경우에는 즉시 은행의 본지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u></p> <p>② <u>제 1항의 신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한 뒤 효력이 생기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복구 등에 의해 사유 해제시 즉시 처리합니다.</u></p> <p>③ <u>제 1항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u></p> <p>제9조(재발급)</p> <p><u>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카드의 분실, 도난, 멸실, 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 요청을 접수한 경우 제 3조의 절차에 의하여 재발급합니다.</u></p> <p>제10조(사용중지)</p> <p>① <u>이용자가 일자에 관계없이 카드 출금비밀번호를 누적하여 3 회 오류 입력시 또는 PIN 을 누적하여 5 회이상 오류 입력시에 은행은 카드를 이용한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u></p> <p>② ~④ (좌동)</p> <p>⑤ <u>카드의 비밀번호 오류입력 횟수 초과, 잔액증명서 발급, 지급제한, 사고신고 접수, 예치한도 초과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카드를 이용하여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u></p> <p>⑥ <u>부정한 방법에 의한 거래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시 은행 및 참가은행은 일시적으로 카드이용을 중지할 수</u></p>	<p>제8조 전체 개정하고 기존 2항을 2항과 3항으로 분리함</p> <p>제 9 조 전체 개정 서술</p> <p>-①항: "카드"를 기준으로 개정</p> <p>거래중지 사유를 추가</p> <p>이용중지 사유를 추가</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11조(이용한도 및 이용시간)</p> <p>① <u>이용한도 및 이용시간은 현금카드 이용약관의 내용을 준수하며 은행의 홈페이지 및 영업점 자동화기기에 게시합니다.</u></p> <p>② <u>카드를 이용한 자동화기기 및 가맹점 이용시간은 당행 및 참가은행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용시간은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 자동화기기에 게시합니다.</u></p> <p>제12조(수수료)</p> <p>① <u>현금 IC 카드의 신규발급 및 재발급시 이용자는 발급매수당 2,000 원의 발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u></p> <p>② <u>자동화기기를 통한 거래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카드 이용약관의 내용을 준수하며 은행의 홈페이지 및 영업점자동화기기에 게시합니다.</u></p> <p>제13조(손해배상 및 면책)</p> <p>① <u>은행은 현금 IC 카드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삽입)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금액과 1 년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합니다.</u></p> <p>② <u>제 1 항(삽입)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u></p>	<p><u>있습니다.</u></p> <p>제11조(이용한도 및 이용시간)(삭제)</p> <p>제 11 조(수수료)</p> <p>① <u>카드의 신규발급 및 재발급시 이용자는 발급매수당 2,000 원의 발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u></p> <p>② <u>카드를 이용한 거래시 거래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은행 및 참가은행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고, 수수료는 은행의 홈페이지 및 영업점 자동화기기에 게시합니다. 다만, 제휴처 결제단말기를 통한 인출 거래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 장소에 게시합니다.</u></p> <p>제 12 조(손해배상 및 면책)</p> <p>① <u>은행은 카드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금액과 1 년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합니다.</u></p> <p>② <u>은행은 소액거래(5 만원 이하 거래)에 대하여 카드 출금비밀 번호 생략으로 결제가 승인되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u></p> <p>③ <u>제 1 항과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u></p>	<p>11 조를 삭제하고 7 조로 통합</p> <p>11 조 삭제로 한 조 씩 올림 (11 조~14 조)</p> <p>결제단말기 인출 거래 추가하여 개정 서술</p> <p>“카드”를 기준으로 개정, 추가사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p> <p>소액거래에 대한 보상내용 추가함</p> <p>③항 단서를 ②항으로 변경</p>

현행	개정안	비고
<p>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u>아니합니다.</u></p> <p>1. <u>이용자가 현금IC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경우</u></p> <p>2. <u>제3자가 권한없이 이용자의 현금IC카드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PIN번호나 출금비밀번호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u></p> <p>③ <u>이용자로부터 현금 IC 카드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은행은 그 때부터 제 3 자가 현금 IC 카드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소액거래(5만원 이하 거래)에 대하여 카드출금비밀번호 생략으로 결제 승인이 된 경우 예금주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은행에 신고하기 전에 발생한 손해를 포함하여 참가은행이 보상합니다.</u></p>	<p>일부를 지지 <u>아니합니다.</u></p> <p>1. <u>이용자가 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경우</u></p> <p>2. <u>제3자가 권한없이 이용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출금비밀번호나 PIN을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u></p> <p>④ <u>이용자로부터 카드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은행은 그 때부터 제 3 자가 카드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u></p>	<p>문구를 매끄럽게 정리함</p> <p>③항을 ④항으로 변경하고, 단서는 ②항으로 이동함</p>
<p>제14조(현금IC카드의 반환) <u>이용자는 예금의 해지시에는 현금IC카드를 거래점에 반환하여야 합니다.</u></p>	<p>제 13 조(카드의 반납) <u>카드의 해지 시에는 이용자는 은행에 카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단, 여러 계좌가 수록된 카드에서 한 개의 계좌만 해지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u></p>	<p>14 조를 13 조로 변경하고, 다계좌 등록카드 해지업무 반영함</p>
<p>제15조(양도 또는 담보제공의 금지) <u>현금IC카드는 양도나 담보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u></p>	<p>제 14 조(양도 또는 담보제공의 금지) <u>카드는 양도나 담보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u></p>	<p>15 조를 14 조로 변경함</p>
<p>제16조(카드의 이용제한)</p> <p>① <u>1회 1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송금, 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범위 내에서 30분간 자동화기기</u></p>	<p>제 16 조(삭제)</p>	<p>제 16 조를 삭제 후 7 조로 통합</p>

현 행	개정안	비 고
<p>를 통한 인출 및 이체가 지연됩니다. 다만, 타점권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p> <p>② 최종거래일로부터 1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거래가 없는 계좌의 자동화기기 1일 인출한도는 70만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 경우 고객은 영업점을 방문하여 인출한도를 상향할 수 있습니다.</p> <p>제 15 조(약관의 변경)(신설)</p> <p>제17조(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은행의 각 예금종류별 약관 및 약정,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법, 참가은행간 CD공동이용업무규약, <u>금융IC카드공동업무규약에서</u>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p> <p>제18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p> <p>(신설)</p>	<p>제 15 조(약관의 변경) <u>약관의 변경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 29 조(약관의 변경)을 준용한다.</u></p> <p>제16조(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은행의 각 예금종류별 약관 및 약정,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법, 참가은행간 CD공동이용업무규약, <u>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에서</u>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p> <p>제17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p> <p><u>부칙</u> <u>(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u></p>	<p>제 15 조 신설</p> <p>17 조를 16 조로 내림</p> <p>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으로 명칭변경</p> <p>18 조를 17 조로 내림</p> <p>신설</p>

2.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 적용